

# C 기획특집

## 漫筆 제조물책임법



평가정책과장 김성환

02) 507-6657 thekims5@hanmail.net

### 1. 글 머리에

사람이 한 평생 살다보면 별 일을 다 겪게 마련이지만 그렇더라도 병원하고 재판정에 가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며 일상을 사는 것이 우리네 보통 삶이라 하겠다. 허나, 사람은 늙게 마련이고 언젠가 병원신세는 지게 마련이라고 보면 어찌 잘만 되면 그 골치 아픈 ‘법’하고는 연을 맺지 않고 안온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지는 않겠나 싶다. 사실 이 사마세계를 살아가는 갑남을녀들이 법하고 상관해서 덕될 일이 무어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일은 또 알 수 없는 것이라, 법이 라면 그저 나한테 손해나 보이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오던 시정서민들도 이제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법하고 그렇게 늘 담쌓고 지날 일만은 아니라는 쪽으로 조금은 생각을 바꾸어 보아야 할 그런 법이 생겼다는 말이다. 이름하여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책임법도 당연히 법인지라 이것을 놓고 그 법적성격부터 시작하여 구성요건, 효과등에 대하여 온갖 법률이론을 동원하며 현란한 논의를 펼치는 것이 이른바 학문적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 그런 휘황한 학문적논의는 매일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네 평균적 보통사람들에게는 별로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공자님말씀일 뿐이다. 그런 학술적 논의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계의 전문가분들께 맡기기로 하고 여

기서는 그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아두면 혹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한다. 아울러 이 제조물책임법은 본래 미국법제에서 독특하게 발달된 불법행위(Tort)법의 한 갈래로서 미국법의 책갈이 매우 강하게 내포된 제도인 만큼, 본고에서는 미국판례를 든 사례설명이 다수 있게 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린다.

### 2. 제조물책임법-왜 필요한가?

방과후 학교운동장에서 여러 아이들이 어울려 놀고 있었다. 한참 잘놀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놀이를 멈추고 한쪽에 몰려 웅성거리고 있는데, 마침 퇴근하시던 교장선생님께서 이를 보고 달려 오셨다. 무슨 사단이 있었는지 철수와 영이가 서로 샅대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영이 이마에는 큼직한 혹이 솟아 있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아이들이 어울려 노느라 혼잡하던중 누가 영이 머리통을 한 대 때렸는데 그 놈이 철수라는 것이 영이 주장이고 자신은 그런 기억이 없으며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일부러 그렇게 아니라 어울려 놀던 중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철수의 주장이다. 딸이 다쳤다는 소식에 놀라 달려온 영이 엄마는 철수의 소행으로 의심은 가나 때리는 걸 직접 보지도 못했고 같이 놀던 아이들중 누구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아이도 없었으니 그저 열만 올라 가지고 썩 썩기릴 뿐이었다. 맞은 놈은 있는데 때린 놈은 없으니 교장선생님도 답답했다. 정황을 볼 때 철수놈이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고 원래 철수 이 놈은 주먹페끼가 좀 있는 놈이라 옆에 있던 아이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기색도 좀 보인다. 최근 몇 달 사이 철수 이놈에게는 계속 이런 의심들 돌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터져서 그간 학부모들 항의에 얼마나 시달렸던가. 더구나 철수는 형편이 괜찮은 제 아버지로부터 늘 두둑한 용돈을 받아 가지고 애들에게 품을 잡고 다니는 놈 아닌가. 앞으로도 발생할 이런 사태를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한 교장선생님은 다음날 아침 직원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도를 중의에 부쳤다. 직원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이번에는 철수가 영이를 일부러 아니면 실수로라도 때렸다는 것을 입증할 딱 부러지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제까지 이런 일을 처리해 왔던 방식에 따르면 어떻게 손을 내줄 방도가 없겠으나 앞으로는 다친 사실이 확실하고 전체 정황으로 보아 때린 사실이 명백하면 일부러 또는 실수로 때렸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다친 아이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제하기로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근학교도 모두 이런 처리방법을 받아들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소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위와 같은 경우가 바로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즉, 이제까지의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가 소송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발생 사실과 함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였다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따라서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자가 예를 들어 가해당시 잠시 정신이 이상한 상태 또는 술에 만취된 상태 등에 있었다거나 해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주장을 반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가해자는 제가 저지른 죄가 있는 만큼 온갖 구실을 갖다 부치고 갖은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마련일터니 보상을 구하는 피해자가 맞서 싸우기는 어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다. 더욱이 가해자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법률싸움을 벌여 보상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 밖에. 상황이 이렇게되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사회정의 어찌고 하는 소리는 다 공염불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달라진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손해의 원인이 가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 3. 제조물책임법의 성립과 발전

위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인 무과실책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간단한 가공사례를 들었으나, 동법의 취지를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소비자나 제품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에게 귀책사유(고의, 과실)가 있는지는 묻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이 제조물책임은 미국법 특유의 법리인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론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정의 및 공평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1) Escola v. Cca Cola Bottling Co. of Fresno, 24 Cal.2d 453, 150 P.2d 436 (Cal,1944)

우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주는 법이론이다. 미국에서 엄격책임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44년 에스콜라사건<sup>2)</sup>이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가게에서 코카콜라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마시려고 하던중 갑자기 병이 폭발하여 그 파편이 눈을 맞아 실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판결에서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결함있는 제조물로부터 손해를 입는 경우의 책임은 위험발생을 용이하게 방지하고 손실을 널리 분산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라 판시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제조물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그 손실은 가격에 전가하여 손쉽게 보전할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제조자가 그의·과실을 따질 것 없이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사회적형평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말이다.

'40년대에 처음 인정된 엄격책임의 법리는 이후 현대 경제의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2차 대전 종료후 경제적 중흥기를 맞이한 미국사회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나, 한편 대량소비의 이면에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역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적 과제로 개발된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6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과학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로서는 제품의 기술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 경제구조의 고도화로 유통구조가 복잡화되면서 이제는 원만한 물건을

을 하나 살려도 소비자가 직접 제조자와 접촉하기(직접적 계약관계)보다는 판매대리점에서 대리점종업원의 조언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즉, 이제는 물품의 제조자와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교환 이해하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글자 그대로 소비의 주체로서만 기능할 뿐이고 물품의 제조·유통·구매·사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나 협상력 등에서 가장 열등한 위치에 놓이게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서 제조물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고 마침내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건(Greenman case)<sup>2)</sup>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자기 부인이 구입하여 선물한 목공선반기계를 사용하던 중 기계의 결함으로 튀어나온 나무파편에 눈을 다쳐 제조자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통적법리에 따라 제품보증의무위반 및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제조업자가 그의 제품이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유통시켰고 그것이 인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때에는 제조업자가 엄격 책임을 진다'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제조업자에게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간 간헐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제조물책임을 판례법상의 원칙으로 확립한 점에 획기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 판결후 미국의 여타 주들이 엄격책임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2)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2d 57, 27 Cal.R. 697, 377 P.2d 897 (Cal.1963)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의 중요법리로 정착되었다.

이 이론의 요점은 ①제품이 판매자의 통할범위를 벗어난 당시(즉, 판매한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결함의 존재), ②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음(결함과 피해발생의 인과관계 존재)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그 제품을 제조한 자는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제조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제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는 판매자를 상대로한 피해배상청구도 인정된다. 이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제조자로부터 제품을 인수받아 단순히 판매만을 대행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판매자는 제조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미국상법(U.C.C)에서는 판매자에게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엄격한 보증책임(warranty of merchantability)을 부담케하고 있는 취지에서 보더라도 판매자에게 제조자와 동등한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제조자를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 판매자가 추후 제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도가 이러하니 제조자가 함부로 물건을 만들어 팔 수가 있겠는가. 우선 만들어 팔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적당히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용납될 리 없다. 그랬다가 큰 코 다친 업체가 한둘이 아니며 아예 공장문 닫고 파산한 사례도 몇 건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제기된 불만에 성의있게 대응하지 않다가 황당한 수준의 고액 배상금으로 두드려 맞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징벌적배상 punitive damage 라고 하

는 것인데, 위에서 따로 이야기할 것임). 보통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비교적 품질이 좋고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해도 곧말없이 응해주는 등 애프터서비스가 좋은 것은 다 이런 사정이 깔려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런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자(1).

#### 4. 제조물책임법의 확산

미국은 '63년 Greenman case로 제조물책임이론을 확립하고 이후 약 2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한 결과 국내적으로 소비자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제품의 품질이 고도화되는 등 산업전반에 걸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도 큰 파급효과가 나타난 바,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수출국의 제품생산도 고도화가 촉진되면서 동시에 주요 교역국도 제조물책임제도의 실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주요선진국들도 제조물책임법제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EU는 '88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94년에 제도를 완비하였고 이어 일본('95), 필리핀('92), 중국('93) 등 30여개국이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면 미국이 엄격책임이론에서 시작하여 제조물책임이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냥 손 놓고 구경만하고 있었느냐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면서 지금의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한 이론을 검토하여 왔다. 제조물책임제도의 새싹을 볼 수 있는 사건의 하나로, 먼저 채혈병사건<sup>3)</sup>의 경우를 보자. 이 사건은 병원에서

3) 대판 76다1259, 1976. 9. 14.

수혈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쇼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사망후 조사에서 체혈병중 일부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었고 이를 근거로 원고는 체혈병 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 체혈병 제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체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체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사망 원인인 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즉, 본건에서는 원고가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패소한 것으로 현재의 제조물책임법의 양대 입증요건의 개념이 처음으로 논의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경상사료사건<sup>4)</sup>을 보자. 이 사건은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해 양계에 먹인 후 며칠 뒤부터 닭들이 심한 중독증상을 보이면서 산란율이 급감하여 양계의 경제성이 없어짐으로써 양계를 모두 폐계처분하게 된 사건이다.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산란율이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하게 된 것인지는 ...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

지만 적어도 그 사료의 ...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인해 ... 닭들에 ...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라고 판시하여 사료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법원은 이 판결에서 '결함 및 과실의 추정은 반드시 ... 구체적인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 사실상의 추정으로서 족하다'고 판시하므로써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취지인 소비자피해구제를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판례에 이어 법원은 '80년대중 다수의 판결<sup>5)</sup>에서 무과실책임법리를 점차 전향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던 중, '92년에 제조물책임이론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중요한 판례가 나타났다. 변압변류기폭발사건<sup>6)</sup>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검정기관의 시험을 거쳐 납품한 변압변기류가 점진적인 절연열화로 인하여 폭발한 사고로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외의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외무를 부담한다.'라는 요지의

4) 대판 75다2092, 1977. 1. 25.

5) 질소가스사건 (대판 78다2221, 1979. 3. 27),  
차량정비공구사건 (대판 79다714, 1979. 7. 10)  
장난감주사기사건 (대판 79다1772, 1979. 12. 26),  
세워사료사건 (대판 82다990, 82다카924, 1983. 5. 24),  
냉장고병꽃이사건 (대전지법 85가합828, 1987. 9.17),  
선박엔진사건 (서울민사지법 86가합3459, 1987. 11. 11),  
솔루메드롤사건 (서울고법 91나55669, 1992. 5. 12)

6) 대판 92다18139, 1992. 11. 24.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제조물책임의 3대 요소인 결함의 존재, 손해발생, 양자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였고 나아가 면책사유까지 언급함으로써 제조물책임제도의 요건을 완벽하게 판시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통적인 계약상의 불법행위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법리로서 제조물책임에 의한 배상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당시 국내 법조계에는 아직 법제화된 제조물책임제도가 없었던 만큼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짐작컨대 담당 판사는 이미 미국의 제조물책임제도를 숙지하고 있었고 그 논지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판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92년의 변압변류기폭발사건<sup>7)</sup>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콜러TV폭발사건<sup>8)</sup>, 자동차화계사건<sup>9)</sup>, 자동차에어백미작동사건<sup>9)</sup>에서 변압변류기폭발사건의 판례에 따른 판결이 계속됨으로써 제조물책임이론이 판례법으로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80년대에 우리 법원이 점차 무과실 제조물책임법리를 수용하기 시작하자 국내에서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동제도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피해를 준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여 아직은 도입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 및 우리의 경쟁상대

인 중진국들의 상당수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였으며, 또 '90년대중반들어 OECD가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의 법제 등 제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검토할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내외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90년대 중반들어 제조물책임제도의 입법을 추진하였고, 그간 수차례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2001.1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다만 국내기업에 동법시행에 대비할 준비기간을 주기 위하여 시행시기는 '02. 7월로 유예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실시로 이제 우리나라도 민사법체계의 선진화에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의 사회 및 경제구조와 국민의식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자못 궁금하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각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 5. 제조물책임의 요소

### (1) "제조물"이란 무엇인가

우리법은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공적으로 만든 유체물이면 모두 제조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거래의 대상인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제조물에의 해당여부가 그렇게 간단히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들어가면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을 것이다. 아직은 법

7) 속초지방법원 94가합131, 1995. 3. 24.

서울고등법원 97나19351, 1998. 2. 20.

8) 서울고법 95나26379, 1996. 6. 19.

9) 대구지방법원 95가단33020, 1996. 6. 11.

서울지방법원 96가합32282, 1998. 2. 25.

시행전이라 좀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제조물의 개념도 점차 명확히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조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무체물의 경우 전기, 음향, 광선, 열 등의 경우가 문제될 것인바, 이들의 경우는 동산의 경우와 같이 관리가 가능하면 유체물에 준하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가<sup>10)</sup>, 구리용해공장에서 이웃토지로 날아간 미세한 구리입자<sup>11)</sup>등을 제조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자연생물의 경우는 '제조 또는 가공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나, 미국의 경우 광견병에 걸린 스컹크를 판매한 애완동물상점 주인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sup>12)</sup>가 있다.

아파트, 빌딩 등 부동산의 경우는 동산이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겠으나 이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독립적 매매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 예를 들어 조명시설, 배관시설, 환기시설, 승강기, 창문, 유리 등은 동산으로서 제조물로 볼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주택사업자에게 신축주택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판시한 사례<sup>13)</sup>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을 추궁함에 있어 대상물품이 제조물에 해당하는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나 그에 한정되지는 아니하고 그보다는 피소업체가 배상책임의 손실을 사회전체에 분산시킬 수 있는 우월한 위치

에 있는지 (쉽게 말해서 배상책임부담후 가격을 인상하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지) 및 피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 (2) '결함'의 의미

제조물의 '결함'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래 제조물이라는 것이 다종다양한 물품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인지라 그 결함에 대하여 모든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쾌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는 소비자가 당해 제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상태(제조물책임법 제2조)를 말한다고 하겠는데, 이 역시 모호하고 추상적인 단어의 연결일 뿐이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기도 할 겸 본래부터 판례법을 중시하는 미국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결함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제조물이

10) Houston Lighting & Power Co. v. Reynolds, 765 S.W.2d 784 (Tex.1998)  
 11) Bradley v. America Smelting and Refining Co. (Wash.1985)  
 12) Sease v. Taylor's Pets, Inc., 74 Or.App. 110, 700 P.2d 1054.  
 13) Blagg v. Fred Hunt Co., Inc. 272 Ark. 285, 612 S.W.2d 321 (Ark.1981)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제조물책임법 제23조). 이 3대 분류는 미국의 제조물책임 판례에서 널리 인정되는 제조물결함의 구분과 그 개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다만 미국 판례에서는 표시상의 결함을 좀 더 세분하여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defective warnings or instructions)'과 "허위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sup>14)</sup> 주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양자는 결함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제품설명 문상의 단순한 경고·지시상의 결함보다 소비자를 기망할 우려가 큰 허위부실표시를 좀 더 엄하게 다루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함의 3개 유형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주요 차이점을 보면, 제조상의 결함은 당해 제품에만 나타난 단발성, 일회성 성격의 결함이라고 하겠고 설계상의 결함은 일관 생산된 동일 모델제품 전체에 발생하는 결함으로 상호 비교될 수 있겠다. 표시상의 결함은 주로 제품라벨, 사용서, 설명서 등에 기재된 기술적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결함의 3개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소비자피해구제 목적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결함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엔진에서 유출된 액체 연료에 실족하여 기계운전자가 부상하였고, 검사결과 동엔진이 사용되면 엔진기는 연료누출이 일어나는 것

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된 경우, 연료누출을 '우연히 발생한 제조상의 하자'로 볼 것인지 또는 연료누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 모델제품 전체에 발생하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sup>15)</sup>가 있었다. 어느 종류의 결함으로 보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배상액 결정에 주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배심원의 판단에 부치기로 하였다) 또 '부적절한 경고'는 '부적절한 설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 생산된 제품 전체에 발생하므로 표시상의 결함을 설계상의 결함으로 분다는 견해도 있다. 카터일 안주로 나온 올리브를 먹다가 속에 든 씨를 씹어 이빨을 다친 경우, 올리브에 구멍이 나 있었으므로(씨를 민 올리브는 양쪽끝을 관통하는 조그만 구멍이 있음) 씨가 제거되지 않은 것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구멍 자체가 소비자에게 씨를 민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므로 표시상의 결함(내지 허위표시)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된 경우<sup>16)</sup>도 있었다. (안주로 제공된 올리브가 씨를 민 것이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제조상의 결함을 주장하기는 약하다.) 판례는 더 나아가 결함있는 제품 자체가 허위표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공구에 부착된 스크루가 부적절한 것인 경우 판매대에 진열된 공구자체가 허위표시가 된다고 한바, 판매목적으로 공구를 진열한 것은 당해 공구가 본연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표시로 볼 것이라고 한 판례<sup>17)</sup>도 있다.

14) Restatement 3d, Torts: Product Liability §9.

15) *Faucett v. Ingersoll-Rand Mining & Machinery Co.*, 960 F.2d 653.

16) *Hochberg v. O'Donnell's Restaurant, Inc.*, 272 A.2d 846 (D.C.App.1971)

17)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59 Cal.2d 57, 27 Cal.R. 697, 377 P.2d 897 (Cal.1963)



제품에 결함이 있느냐 하는 것은 특히 설계상의 결함에서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설계상의 결함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가치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미 다수의 실패사례가 보고된 인공심장판막을 시술받았으나 현재까지 정상작동 되고 있으므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례<sup>18)</sup>, 특수설계된 총탄은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매우 위험하게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례<sup>19)</sup>가 있고 반면 8~12년간 작동되도록 설계된 인공관절이 시술 후 3년밖에 작동하지 않았다면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한 판례<sup>20)</sup>가 있다.

제품의 결함은 당연히 제조물책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결함이 결정적 요건은 아니며 무결함 제조물책임도 다수 인정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고무새총을 구입 사용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sup>21)</sup>, 자동차전면유리를 안전유리로 오인하고 판매한 경우<sup>22)</sup> 등에서 미국 법원은 당해 제품에는 결함이 없더라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바, 이는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보겠다.

(이하 다음 호에 계속)



18) Pfizer, Inc. v. Farsian, 682 So.2d 405 (Ala.1996)  
 19) McCarthy v. Olin Corp., 119 Fed.3d 148 (2nd Cir.1997)  
 20) Haudrich v. Howmedica, Inc., 169 Ill.2d 525, 215 Ill.Dec.108, 662 N.E.2d 1248 (Ill.1996)  
 21) Moning v. Alfonso, 400 Mic. 425, 254 N.W.2d 759 (Mich.1977)  
 22) Baxter v. rd Motor Co., 179 Wash. 123, 35 P.2d 1090 (Wash.1934), 168 Wash. 456, 12 P.2d 409 (Wash.1932)